



의안번호	제 2013 - 11호
의 결 연 월 일	2013. 4. 22. (제48차 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1. 사건 접수	1
2. 처리 현황	11
I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26
III.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결과 보고	27
1. 개요	27
2.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회신 의견 종합	29
IV.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77	
1. 개요	77
2. 관련 규정	77
3. 공개 방법	78
4. 추진 일정	78
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79
1. 서면 질의 및 회신	79
 □ 별첨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사건 접수

○ 제1기 및 제2기,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시행 이후 기간 동안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제1기 대상범죄(2009. 7. 1. ~ 2013. 1. 31.)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전체
살인 범죄	강간살인	4	0	4
	강도살인	31	0	31
	강도살인미수	16	0	16
	살인	1,078	12	1,090
	살인교사	3	0	3
	살인미수	1,481	30	1,511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19	0	19
	존속살해	105	2	107
	존속살해미수	54	0	54
	특가법(보복범죄등)	0	1	1
	전체	2,792	45	2,837
뇌물 범죄	뇌물공여	2,041	36	2,077
	뇌물공여교사	2	0	2
	뇌물공여약속	0	1	1
	뇌물수수	1,448	17	1,465
	부정처사후수뢰	76	1	77
	수뢰후부정처사	89	1	90
	제3자뇌물교부	106	0	106
	제3자뇌물취득	113	2	115
	특가법(뇌물)	445	6	451
	전체	4,320	64	4,384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전체
성 범 죄	강간	706	11	717
	강간살인	5	0	5
	강간상해	620	5	625
	강간치사	4	0	4
	강간치상	1,093	8	1,101
	강도강간	67	0	67
	강제추행	4,173	148	4,321
	강제추행상해	129	3	132
	강제추행치상	432	5	437
	미성년자의제강간	71	1	72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8	1	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83	2	85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2	0	2
	상습강제추행	5	0	5
	상습준강제추행	2	0	2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657	3	660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1	0	11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62	1	163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192	0	192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75	1	176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40	0	40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367	5	372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119	1	12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57	1	158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7	0	1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42	1	43
	성폭력범죄(특수강간)	470	1	471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13	1	314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50	0	50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124	0	124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2	0	2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799	5	80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15	13	228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5	1	6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9	2	21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6	0	6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9	4	13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345	6	35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358	5	36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53	5	5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49	5	54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85	5	290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23	4	2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8	2	10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2	7	9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21	2	23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50	1	5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711	12	723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184	5	189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98	5	203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0	2	2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37	0	37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783	6	789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247	2	249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112	2	11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291	7	298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20	0	20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2,608	37	2,645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283	35	31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37	4	4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24	2	26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14	1	15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전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15	1	16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3	0	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64	1	65
	준강간	363	9	372
	준강간상해	1	0	1
	준강간치상	47	1	48
	준강제추행	620	16	636
	준강제추행상해	2	0	2
	준강제추행치사	1	0	1
	준강제추행치상	13	0	13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394	0	394
	특가법(강도강간)	1	0	1
	전체	19,638	414	20,052
강도 범죄	강도	536	9	545
	강도교사	2	0	2
	강도살인	67	0	67
	강도상해	2,317	31	2,348
	강도상해교사	1	0	1
	강도치사	19	1	20
	강도치상	174	3	177
	준강도	293	3	296
	준특수강도	46	0	46
	특가법(강도)	35	0	35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42	1	43
	특강법(특수강도)	2	0	2
	특수강도	1,914	37	1,951
	전체	5,448	85	5,533
횡령 · 배임 범죄	배임	1,802	14	1,816
	업무상배임	2,035	36	2,071
	업무상횡령	8,924	143	9,067
	특경가법(배임)	1,133	12	1,145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전체
	특경가법(횡령)	1,529	31	1,560
	횡령	7,971	162	8,133
	전체	23,394	398	23,792
위증 범죄	모해위증	69	0	69
	모해위증교사	1	0	1
	위증	4,390	79	4,469
	위증교사	582	10	592
	전체	5,042	89	5,131
무고 범죄	무고	6,502	107	6,609
	무고교사	10	6	16
	특가법(무고)	23	0	23
	특가법(무고)교사	1	0	1
	전체	6,536	113	6,649
총계		67,170	1,208	68,378

나. 제2기 대상범죄(2011. 7. 1. ~ 2013. 1. 31.)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2. 12.	2013. 1.	전체
약취 · 유인 범죄	간음약취	2	0	2
	간음유인	1	0	1
	미성년자약취	23	1	24
	미성년자유인	18	1	19
	영리약취	2	0	2
	영리유인	3	0	3
	추행유인	3	1	4
	특가법(약취·유인)	21	0	21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53	2	55
	전체	126	5	131
사기 범죄	사기	51,209	2,776	53,985
	상습사기	214	6	220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2	0	2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2. 12.	2013. 1.	전체
	준사기	26	1	27
	컴퓨터등사용사기	452	28	480
	특경가법(사기)	1,238	50	1,288
	전체	53,141	2,861	56,002
절도 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45	2	47
	산림보호법위반	69	3	7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342	13	355
	상습절도	2	0	2
	상습특수절도	2	0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857	31	8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2	0	2
	야간방실침입절도	95	1	96
	야간선박침입절도	2	0	2
	야간주거침입절도	607	22	629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1	0	1
	절도	9,870	545	10,415
	절도교사	20	1	21
	특가법(산림)	68	0	68
	특가법(절도)	3,158	163	3,321
	특수절도	5,098	253	5,351
	특수절도교사	2	2	4
	전체	20,240	1,036	21,276
공 문 서 범 죄	공문서변조	142	4	146
	공문서변조교사	1	1	2
	공문서부정행사	691	30	721
	공문서부정행사교사	5	0	5
	공문서위조	526	15	54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797	30	827
	공전자기록등위작	24	0	2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279	11	290
	변조공문서행사	12	0	12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2. 12.	2013. 1.	전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34	0	3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1	0	21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2	0	2
	위조공문서행사	50	0	50
	자격모용공문서작성	1	0	1
	허위공문서작성	69	2	7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8	0	8
	전체	2,662	93	2,755
사 문 서 범 죄	변조사문서행사	132	1	133
	사문서변조	86	8	94
	사문서부정행사	8	0	8
	사문서위조	2,138	107	2,245
	사문서위조교사	5	1	6
	사전자기록등변작	9	0	9
	사전자기록등위작	39	2	41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0	2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2	0	2
	위조사문서행사	189	0	189
	자격모용사문서작성	88	8	96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7	0	7
	허위작성진단서행사	5	0	5
	허위진단서작성	15	2	17
	허위진단서작성교사	1	0	1
	전체	2,724	131	2,855
공 무 집 행 방 해 범 죄	공무집행방해	8,588	267	8,855
	공무집행방해교사	1	0	1
	공용건조물파괴	3	0	3
	공용물건무효	3	0	3
	공용물건손상	960	36	996
	공용물건은닉	2	0	2
	공용서류무효	15	2	17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2. 12.	2013. 1.	전체
	공용서류손상	87	2	89
	공용서류은닉	5	0	5
	위계공무집행방해	418	11	429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0	1	1
	특수공무집행방해	485	13	49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71	6	277
	특수공용물건손상	15	3	18
	전체	10,853	341	11,194
식품 · 보건 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142	8	15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784	58	84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16	1	1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433	9	4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4	0	4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3	0	3
	식품위생법위반	2,013	125	2,138
	식품위생법위반교사	3	0	3
	약사법위반	493	39	532
	의료법위반	1,220	43	1,263
	의료법위반교사	2	0	2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3	0	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89	6	95
	화장품법위반	27	4	31
	전체	5,232	293	5,525
마약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901	21	9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65	4	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4,849	221	5,07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624	29	653
	특가법(마약)	1	0	1
	특가법(향정)	17	0	17
	전체	6,457	275	6,732
총계		101,435	5,035	106,470

다. 제3기 대상범죄(2012. 7. 1. ~ 2013. 1. 31.)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2. 12.	2013. 1.	전체
증권 · 금융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71	11	82
	증권거래법위반	24	2	26
	특경가법(수재등)	11	5	16
	특경가법(알선수재)	52	9	61
	특경가법(증재등)	13	2	15
	전체	171	29	200
지식 재산 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12	0	1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81	1	8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9	0	9
	상표법위반	471	68	539
	실용신안법위반	2	1	3
	저작권법위반	410	84	494
	특허법위반	10	0	10
	전체	995	154	1,149
폭력 범죄	상습폭행	1	0	1
	상해	8,219	1,435	9,654
	상해교사	1	0	1
	상해치사	57	8	65
	존속상해	58	4	62
	존속상해치사	1	0	1
	존속중상해	2	0	2
	존속폭행	14	4	18
	존속폭행치사	1	0	1
	존속폭행치상	2	0	2
	존속협박	9	0	9
	중상해	29	7	36
	특가법(보복범죄등)	0	4	4
	특가법(보복상해등)	1	0	1
	특가법(보복폭행등)	2	0	2
	특가법(보복협박등)	3	3	6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2. 12.	2013. 1.	전체
	특가법(운전자폭행등)	371	65	436
	특수존속협박	1	0	1
	특수폭행	35	4	39
	특수폭행치사	1	0	1
	특수폭행치상	1	1	2
	특수협박	49	10	59
	폭처법(공동상해)	2,227	404	2,631
	폭처법(공동상해)교사	2	0	2
	폭처법(공동존속상해)	5	2	7
	폭처법(공동폭행)	480	105	585
	폭처법(공동협박)	53	17	70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3	0	3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3	0	3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3	0	3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상해)	1	0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상해)	16	1	17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폭행)	2	0	2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5	1	6
	폭처법(상습상해)	38	2	40
	폭처법(상습존속폭행)	5	0	5
	폭처법(상습존속협박)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상해)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상해)	0	1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협박)	1	0	1
	폭처법(상습폭행)	30	2	32
	폭처법(상습협박)	9	0	9
	폭처법(야간.공동상해)	3	2	5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2,743	301	3,044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교사	5	0	5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상해)	19	1	20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폭행)	3	0	3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2. 12.	2013. 1.	전체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협박)	7	0	7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	562	81	643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교사	0	1	1
	폭처법(집단.흥기등협박)	759	78	837
	폭행	2,928	609	3,537
	폭행치사	36	7	43
	폭행치상	98	22	120
	협박	438	112	550
	협박교사	1	0	1
	전체	19,345	3,294	22,639
교통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5,775	978	6,753
	특가법(도주차량)	2,799	441	3,240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1,816	288	2,104
	전체	10,390	1,707	12,097
선거 범죄	공직선거법위반	518	57	575
	전체	518	57	575
총계		31,419	5,241	36,660

※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접수건수임.

-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 미수범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사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2. 처리 현황

- 제1기 및 제2기,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2013. 1. 31. 까지 제1심 법원에서 처리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범죄군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3. 1.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09. 7. ~ 2012. 12.	살인범죄	수	2,494	1	0	2,495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범죄	수	1,871	1,210	48	3,129
		비율	59.8%	38.7%	1.5%	100.0%
	성범죄	수	11,895	1,828	1,238	14,961
		비율	79.5%	12.2%	8.3%	100.0%
	강도범죄	수	4,651	12	0	4,663
		비율	99.7%	0.3%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2,910	13,009	3,514	19,433
		비율	15.0%	66.9%	18.1%	100.0%
	위증범죄	수	91	3,490	754	4,335
		비율	2.1%	80.5%	17.4%	100.0%
	무고범죄	수	181	3,868	1,154	5,203
		비율	3.5%	74.3%	22.2%	100.0%
	전체	수	24,093	23,418	6,708	54,219
		비율	44.4%	43.2%	12.4%	100.0%
2013. 1.	살인범죄	수	59	0	0	59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범죄	수	56	16	4	76
		비율	73.7%	21.1%	5.3%	100.0%
	성범죄	수	420	107	53	580
		비율	72.4%	18.4%	9.1%	100.0%
	강도범죄	수	78	0	0	78
		비율	100.0%	0.0%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97	330	91	518
		비율	18.7%	63.7%	17.6%	100.0%
	위증범죄	수	1	78	21	100
		비율	1.0%	78.0%	21.0%	100.0%
	무고범죄	수	3	82	32	117
		비율	2.6%	70.1%	27.4%	100.0%
	전체	수	714	613	201	1,528
		비율	46.7%	40.1%	13.2%	100.0%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3. 1.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1. 7. ~ 2012. 12.	약취·유인범죄	수	101	24	0	125
		비율	80.8%	19.2%	0.0%	100.0%
	사기범죄	수	2,164	26,350	9,394	37,908
		비율	5.7%	69.5%	24.8%	100.0%
	절도범죄	수	1,719	12,266	3,070	17,055
		비율	10.1%	71.9%	18.0%	100.0%
	공문서범죄	수	163	965	519	1,647
		비율	9.9%	58.6%	31.5%	100.0%
	사문서범죄	수	115	1,328	723	2,166
		비율	5.3%	61.3%	33.4%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524	4,000	3,491	8,015
		비율	6.5%	49.9%	43.6%	100.0%
	식품·보건범죄	수	71	845	2,858	3,774
		비율	1.9%	22.4%	75.7%	100.0%
	마약범죄	수	668	4,442	91	5,201
		비율	12.8%	85.4%	1.7%	100.0%
	전체	수	5,525	50,220	20,146	75,891
		비율	7.3%	66.2%	26.5%	100.0%
2013. 1.	약취·유인범죄	수	7	1	0	8
		비율	87.5%	12.5%	0.0%	100.0%
	사기범죄	수	177	2,223	641	3,041
		비율	5.8%	73.1%	21.1%	100.0%
	절도범죄	수	126	781	194	1,101
		비율	11.4%	70.9%	17.6%	100.0%
	공문서범죄	수	3	71	31	105
		비율	2.9%	67.6%	29.5%	100.0%
	사문서범죄	수	12	104	43	159
		비율	7.5%	65.4%	27.0%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45	174	203	422
		비율	10.7%	41.2%	48.1%	100.0%
	식품·보건범죄	수	2	96	158	256
		비율	0.8%	37.5%	61.7%	100.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마약범죄	수	62	289	3	354
		비율	17.5%	81.6%	0.8%	100.0%
	전체	수	434	3,739	1,273	5,446
		비율	8.0%	68.7%	23.4%	100.0%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3. 1.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2. 7. ~ 2012. 12.	증권·금융범죄	수	13	18	10	41
		비율	31.7%	43.9%	24.4%	100.0%
	지식재산범죄	수	1	216	328	545
		비율	0.2%	39.6%	60.2%	100.0%
	폭력범죄	수	558	4,932	5,738	11,228
		비율	5.0%	43.9%	51.1%	100.0%
	교통범죄	수	932	3,407	2,123	6,462
		비율	14.4%	52.7%	32.9%	100.0%
	선거범죄	수	278	18	0	296
		비율	93.9%	6.1%	0.0%	100.0%
	전체	수	1,782	8,591	8,199	18,572
		비율	9.6%	46.3%	44.1%	100.0%
2013. 1.	증권·금융범죄	수	15	14	2	31
		비율	48.4%	45.2%	6.5%	100.0%
	지식재산범죄	수	0	39	91	130
		비율	0.0%	30.0%	70.0%	100.0%
	폭력범죄	수	143	1222	1305	2670
		비율	5.4%	45.8%	48.9%	100.0%
	교통범죄	수	215	986	435	1636
		비율	13.1%	60.3%	26.6%	100.0%
	선거범죄	수	58	3	0	61
		비율	95.1%	4.9%	0.0%	100.0%
	전체	수	431	2264	1833	4528
		비율	9.5%	50.0%	40.5%	100.0%

※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나. 세부죄명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3. 1. 31.)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전체
살인 범죄	강간살인	2	0	2
	강도살인	20	0	20
	강도살인미수	19	0	19
	살인	971	21	992
	살인미수	1,327	34	1,361
	살인미수교사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13	2	15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미수	1	0	1
	존속살해	92	1	93
	존속살해미수	46	0	46
	특가법(보복범죄등)	0	1	1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단체등의살인)	2	0	2
	전체	2,495	59	2,554
뇌물 범죄	뇌물공여	1,475	35	1,510
	뇌물공여교사	2	1	3
	뇌물수수	980	27	1,007
	부정처사후수뢰	56	1	57
	수뢰후부정처사	67	0	67
	제3자뇌물교부	88	0	88
	제3자뇌물제공	0	0	0
	제3자뇌물취득	94	0	94
	특가법(뇌물)	367	12	379
	전체	3,129	76	3,205
성 범 죄	강간	472	16	488
	강간살인	3	0	3
	강간상해	549	15	564
	강간치사	3	1	4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전체
	강간치상	907	28	935
	강도강간	53	3	56
	강제추행	2,712	146	2,858
	강제추행상해	134	0	134
	강제추행치상	383	12	395
	미성년자의제강간	50	1	51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9	0	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52	3	55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1	0	1
	상습강제추행	2	0	2
	상습준강제추행	1	0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567	11	578
	성폭력범죄(13세미만위계등간음)	0	1	1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8	0	8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45	1	146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154	0	154
	성폭력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1	0	1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55	3	158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40	1	41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335	7	342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112	0	112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31	1	132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5	0	15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29	0	29
	성폭력범죄(특수강간)	334	4	338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272	7	279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35	0	35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76	0	7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708	17	725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24	21	145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2	2	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1	2	13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6	0	6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4	3	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유사성행위)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285	7	29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사)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279	8	287
	성폭력범죄특례법(미성년자강간등)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간음)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28	12	40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31	4	35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45	3	24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3	2	5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2	2	4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력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8	2	10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44	1	45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616	28	644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139	5	144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55	9	164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1	3	24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38	2	4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546	22	568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247	7	25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88	1	89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187	8	19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9	0	9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	0	1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4	0	4
	성폭력처벌법(장애인위계등간음)	10	0	10
	성폭력처벌법(장애인위계등추행)	2	0	2
	성폭력처벌법(장애인유사성행위)	2	0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	4	0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2,233	45	2,278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143	49	19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20	4	2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18	5	2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10	4	1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7	1	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42	7	49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교사	1	0	1
	준강간	214	10	224
	준강간상해	1	0	1
	준강간치상	40	2	42
	준강제추행	419	21	440
	준강제추행상해	2	0	2
	준강제추행치사	1	0	1
	준강제추행치상	14	0	14
	청소년성보호법	1	0	1
	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4	0	4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186	0	186
	특가법(강도강간)	1	0	1
	전체	14,961	580	15,541
강도	강도	475	11	486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전체
범죄	강도교사	1	0	1
	강도살인	63	0	63
	강도상해	1,853	24	1,877
	강도상해교사	1	0	1
	강도치사	25	1	26
	강도치상	150	4	154
	준강도	283	3	286
	준특수강도	43	1	44
	특가법(강도)	40	2	42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38	1	39
	특강법(특수강도)	1	0	1
	특수강도	1,690	31	1,721
	전체	4,663	78	4,741
횡령 · 배임 범죄	배임	1,479	35	1,514
	업무상배임	1,450	25	1,475
	업무상횡령	7,538	193	7,731
	특경가법(배임)	842	25	867
	특경가법(횡령)	1,332	55	1,387
	횡령	6,793	185	6,978
	전체	19,434	518	19,952
위증 범죄	모해위증	53	1	54
	위증	3,663	89	3,752
	위증교사	619	10	629
	전체	4,335	100	4,435
무고 범죄	무고	5,169	115	5,284
	무고교사	9	2	11
	특가법(무고)	24	0	24
	특가법(무고)교사	1	0	1
	전체	5,203	117	5,320
총계		54,220	1,528	55,748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3. 1. 31.)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2. 12.	2013. 1.	전체
약취 · 유인 범죄	간음약취	1	1	2
	미성년자약취	18	0	18
	미성년자유인	13	0	13
	영리약취	2	1	3
	영리유인	2	0	2
	추행유인	0	1	1
	특가법(약취·유인)	17	1	18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72	4	76
	전체	125	8	133
사기 범죄	사기	36,291	2,903	39,194
	사기교사	2	0	2
	상습사기	174	13	187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2	0	2
	준사기	22	0	22
	컴퓨터등사용사기	470	39	509
	특경가법(사기)	947	86	1,033
	전체	37,908	3,041	40,949
절도 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23	1	24
	산림보호법위반	45	2	4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9	8	217
	상습절도	7	0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642	48	6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2	0	2
	야간방실침입절도	75	5	80
	야간선박침입절도	2	0	2
	야간주거침입절도	522	40	562
	절도	7,963	498	8,461
	절도교사	17	1	18
	특가법(산림)	32	1	33
	특가법(상습절도)	2	0	2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2. 12.	2013. 1.	전체
	특가법(절도)	2,912	218	3,130
	특수절도	4,594	279	4,873
	특수절도교사	4	0	4
	전체	17,051	1,101	18,152
공 문 서 범 죄	공도화변조	1	0	1
	공문서변조	88	8	96
	공문서변조교사	1	0	1
	공문서부정행사	330	19	349
	공문서부정행사교사	2	1	3
	공문서위조	336	23	359
	공문서위조교사	1	0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602	26	62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	1	0	1
	공전자기록등위작	15	1	1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70	11	181
	변조공문서행사	4	0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3	0	3
	위조공문서행사	28	3	31
	허위공문서작성	55	13	68
	허위공문서행사	1	0	1
	전체	1,638	105	1,743
사 문 서 범 죄	변조사문서행사	9	0	9
	사문서변조	107	14	121
	사문서부정행사	5	0	5
	사문서위조	1,875	136	2,011
	사문서위조교사	4	0	4
	사문서위조행사	1	0	1
	사전자기기록등변작	4	0	4
	사전자기기록등위변작	2	0	2
	사전자기기록등위작	26	0	26
	사전자기기록변작	1	0	1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2. 12.	2013. 1.	전체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0	1
	위조사문서행사	62	1	63
	위조사서명행사	2	0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60	3	63
	허위진단서작성	7	5	12
	전체	2,166	159	2,325
공무 집행 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6,068	302	6,370
	공무집행방해교사	1	0	1
	공용건조물파괴	3	0	3
	공용물건무효	2	0	2
	공용물건손상	871	36	907
	공용물건손상교사	2	0	2
	공용물건은닉	1	0	1
	공용서류무효	10	0	10
	공용서류손상	77	4	81
	공용서류은닉	5	0	5
	공용전자기록등손상	1	0	1
	위계공무집행방해	322	17	339
	특수공무집행방해	407	28	4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27	35	262
	특수공용건조물파괴	1	0	1
	특수공용물건손상	17	0	17
	전체	8,015	422	8,437
식품 · 보건 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81	2	83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0	0	1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688	35	7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306	31	3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1	0	1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0	1
	식품위생법위반	1,433	105	1,538
	약사법위반	353	37	390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2. 12.	2013. 1.	전체
	의료법위반	793	44	837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4	0	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71	1	72
	화장품법위반	30	1	31
	전체	3,771	256	4,027
마약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593	36	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54	0	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4,001	287	4,28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544	29	573
	특가법(마약)	1	0	1
	특가법(향정)	8	2	10
	전체	5,201	354	5,555
총계		75,875	5,446	81,321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3. 1. 31.)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2. 12.	2013. 1.	전체
증권 · 금융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3	11	24
	증권거래법위반	4	2	6
	특경가법(수재등)	3	3	6
	특경가법(알선수재)	18	11	29
	특경가법(증재등)	3	4	7
	전체	41	31	72
지식 재산 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6	3	9
	부경법(영업비밀누설등)	3	1	4
	상표법위반	327	56	383
	실용신안법위반	1	0	1
	저작권법위반	208	69	277
	특허법위반	3	1	4
	전체	548	130	678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2. 12.	2013. 1.	전체
폭력 범죄	상해	4,640	1,103	5,743
	상해교사	0	1	1
	상해치사	26	13	39
	존속상해	37	10	47
	존속중상해	2	0	2
	존속폭행	4	1	5
	존속폭행치상	1	0	1
	존속협박	4	0	4
	중상해	10	6	16
	집단흥기등폭행	1	0	1
	특가법(보복범죄등)	50	15	65
	특가법(보복상해등)	0	1	1
	특가법(운전자폭행등)	254	57	311
	특수존속협박	1	0	1
	특수폭행	17	8	25
	특수협박	28	4	32
	폭처법(공동상해)	1,267	274	1,541
	폭처법(공동존속상해)	2	0	2
	폭처법(공동폭행)	269	61	330
	폭처법(공동협박)	33	5	38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1	0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상해)	2	7	9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폭행)	0	2	2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3	1	4
	폭처법(상습상해)	31	4	35
	폭처법(상습존속폭행)	3	0	3
	폭처법(상습폭행)	30	5	35
	폭처법(상습협박)	7	2	9
	폭처법(야간·공동상해)	2	1	3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1,574	390	1,964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교사	2	2	4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2. 12.	2013. 1.	전체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상해)	12	2	14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폭행)	5	0	5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협박)	7	1	8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	355	83	438
	폭처법(집단·흥기등협박)	527	138	665
	폭처법(흥기등상해)	11	0	11
	폭처법(흥기등협박)	8	0	8
	폭행	1,694	385	2,079
	폭행교사	1	2	3
	폭행치사	16	8	24
	폭행치상	47	15	62
	협박	247	63	310
	전체	11,231	2,670	13,901
교통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547	927	4,474
	특가법(도주차량)	1,672	407	2,079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1,243	302	1,545
	전체	6,462	1,636	8,098
선거 범죄	공직선거법위반	296	61	357
	전체	296	61	357
총계		18,578	4,528	23,106

※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I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67차	2013. 4. 15. 14:00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내용 검토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초안 검토

III.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1. 개요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 11조 및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법원 등 관계 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 (2013. 4. 11. 기준)

가. 대상 기관

- 전문위원단 검토 내용을 기초로 양형위원회 제47차 회의(2013. 3. 25.)에서 의결한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나. 조회 기간 : 2013. 3. 26. ~ 2013. 4. 10.

다. 회신 기관

○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36개(국회 4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10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참여연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전화, 대한법무사협회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36개(국회 4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13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참여연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YWCA연합

회, 여성가족부, 대한법무사협회

라. 회신자료

- 별첨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자료」와 같음

2.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회신 의견 종합

◆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회신 의견

가. 대법원

○ 유형분류 및 유형의 정의에 대한 의견

- ‘비관 등에 의한 친족 살인’을 참작 동기 살인의 예시로 포함시킨 것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타당함
- 피고인의 형편 등이 어려워 우울한 상태에 이르러 살인한 것을 유리한 동기로 참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부모가 나이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는 것에 대하여는 오히려 가중처벌이 필요함
- 친족의 범위가 매우 넓음에도 일률적으로 친족에 대한 범행을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함
- 피해자를 간호·부양하지도 않은 피고인이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거나 치료의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하는 경우 까지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
- 범행의 동기는 조작될 우려가 많으므로 동기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동기는 특별양형인자 정도로 고려함이 타당함
- 유형의 정의 부분에 ‘친족’과 ‘가족’이라는 표현을 혼용하고 있어 혼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친족’으로 통일함이 타당
- 양형기준안은 비관 등에 의한 친족 살인의 예로 ① 삶을 비관하거나 우울증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자녀 등 친족을 살해한 경우, ②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거나 치료의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위 ②의 예는 수궁이 가나, 위 ①의 예는 ②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아 보여서 예시로 부적절하며, 특별양형인자 중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족함

- 현행 양형기준은 ‘특가법상 보복살인’을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에 포함시켰으나,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것으로서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등 다른 유형의 ‘비난 동기 살인’보다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함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관련
 - ▶ 개정된 아청법 제10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살인 등)을 반영하여 추가한 것은 적절한 조치임
 - ▶ 다만, 형법 제301조의2가 개정되어 기존의 강간살인과 강제추행살인 이외에 유사강간살인이 추가되었으므로 제4유형 중 첫 번째 유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 ■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살인범죄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 찬성하는 의견이었으나, 폭력범죄군(폭행범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폭행치사)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보통 동기 살인’의 권고 형량범위가 다소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음
-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영역 상한이 16년인 것은 현재의 평균 수명에 비추어 경한 면이 있음
- 특별조정 결과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 필요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별도의 표로 만드는 것이 적절함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적 지시에 따른 범행’을 유형분류의 기준이나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있음
-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와 관련하여, 현재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나,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정을 알았던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함

- '중한 상해'와 관련하여 치료기간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통상적으로 중한 상해라고 하면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치료기간 이외에는 달리 객관적 기준으로 제시할 만한 요소가 없어 부득이 기존의 양형 기준에서는 치료기간이 4~5주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이에 형식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후유장애,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양형인자의 정의를 두고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번 수정안처럼 객관적 기준을 삭제하면 오히려 양형인자의 객관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양형인자는 살인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 폭력범죄 등 다른 범죄들에도 공통되는 요소이므로 치료기간을 삭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됨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대한 의견

- 살인죄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기존의 경합범 처리례에 따라 단순가중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므로, 적어도 살인죄에 있어서는 새로운 방식을 설정하거나 기존의 가중방식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생명을 피해법익으로 하는 살인죄에서 다른 범죄와 같이 동일기회에 벌어진 다수 범죄라는 이유로 단순가중을 하는 것은 부

적절

○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의견

- 집행유예의 일반부정적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잔혹한 범행수법’을 집행유예의 주요부정적참작사유로 수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잔혹한 범행수법’은 다음과 같이 다른 집행유예 참작사유와 중복 적용될 우려가 있음
 - ▶ ‘잔혹한 범행수법’은 방화나 폭발물을 이용하여 살해한 경우, 흉기로 급소를 수십 차례 찌른 경우,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바 대부분 ‘중한 상해’가 동반될 것이므로, ‘중한 상해’와 중복 적용의 우려 있음
 - ▶ ‘위험한 물건 휴대’라는 집행유예 참작사유와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임

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유형분류에 대한 의견

- 살인죄 가운데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경우 형사사법체계의 무력화를 기도하는 범죄의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 분류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함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2013. 3. 5. 정부 제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¹⁾함에 따라 양형인자의 정의에 있어 ‘6.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의 내용을 일부 수정²⁾해야 할 것으로 보임

1) 2013. 3. 29. 정부 이송되어 2013. 4. 9. 현재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공포일 즉시 시행 예정임.

2) 형법 개정안은 “추행, 간음, 결혼, 영리, 국외이송 목적” 외에 규정되어 있던 “추업사용 목적”을 삭제하고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추가하였음.

다. 법무부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참작 동기 살인’의 형량범위 수정)

-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한 범죄임에도, 성범죄·뇌물범죄 등의 양형기준 중 일부 유형과 비교하여 권고 형량범위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 유형이 존재
 - ▶ 예를 들어 참작 동기 살인의 경우, ‘가중영역’의 하한이 법정형 하한(징역 5년)과 동일한 것은 문제가 있음(최소한 가중영역의 하한은 법정형 하한보다는 높아야 함)
 - ▶ 참고로 참작 동기 살인에 있어서 긍정적 양형 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해당 유형에서 감경 영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므로, 가중영역의 하한을 높이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큰 문제가 없음
 - ▶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참작동기 살인유형에서 형량 범위를 제시함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6년	5년 - 8년	6년 - 10년

라. 대한변호사협회

※ 이하에서 반대하는 부분 외에는 수정안에 대해 찬성함

○ 유형분류 및 유형의 정의에 대한 의견

- 제1유형 참작동기 살인의 설명문에서 “비관 등에 의한 친족 살인”이 국민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설명문을 다듬을 필요가 있으며, “친족”과 “가족”의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의 경우에 “비관 등에 의한 친족 살인”을 추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양형기준이 일

반 국민에게 알려질 경우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극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손쉽게 살인의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감경 유형이 적용된다는 신호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설명문에서 잘 다듬을 필요가 있음

- ▶ 위 양형요소를 설명하면서 “친족”이라는 용어와 “가족”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데, 민법상 양자의 범위가 다르므로 특별히 이를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면 이를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고, 만일 이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양자를 구별하는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 ▶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되어 있고, 친족은 일반적으로는 가족보다 넓은 개념이지만 민법 제777조에 따라 법률상 의미가 있는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되어 있음. 따라서 양자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무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으므로 어느 하나로 용어를 통일하거나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살인죄의 구간별 형량의 폭이 지나치게 넓음
 - ▶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 감경, 기본, 가중형의 형량 폭이 종전에 4년, 4년, 5년이던 것을 5년, 6년, 35년으로 개정하고, 비난 동기 살인의 경우 4년, 4년, 10년이던 것을 6년, 5년, 32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법정형이 상향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그 폭이 넓다고 생각됨
- 제1유형과 제2형 사이의 형량 간극이 지나치게 넓은 바, 제1유형의

형량을 상향조정하는 것보다는 제2유형 이하의 형량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특별히 살인죄의 형량 구간 설정과 관련하여 1유형(참작 동기 살인)과 2유형(보통 동기 살인) 사이의 형량 간극이 지나치게 넓은 점. 살인죄의 법정형을 고려한다면 보통 동기 살인 유형의 기준형량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 살인죄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가장 중요한 범죄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살인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행 양형체계상 살인죄에 대하여도 작량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자의 의사는 살인죄에 관하여 2년 6월의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규정한 것임
 - ▶ 따라서 이러한 법정형의 체계를 고려할 때 참작 동기에 의한 살인 유형 중 기본유형의 상한은 6년임에 비하여 그 다음 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 중 기본유형의 하한이 10년이어서 6년과 10년이라는 지나치게 넓은 형량의 간극이 생겨나게 되어 이와 같이 간극을 허용하는 양형기준이 입법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지 의문임
- 양형기준상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 유형의 기준 형량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함
- ▶ 수정안에 따르면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 감경유형에서 7년 이상, 기본유형에서 10년 이상, 가중유형에서 15년 이상의 형량을 구획하고 있는데, 제1유형의 참작 동기 살인이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히 형을 감경하여야 할 사정을 고려하여 낮은 형량을 선고

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유형은 제2유형의 보통 동기 살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 그런데 이러한 보통 동기 살인 유형의 형량을 10년~16년(기본 유형)으로 구획한다면, 실제 실무에서는 대체로 12년 내지 13년 정도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입법자가 법정형으로 규정한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유형의 형량을 이와 같이 2배 이상 높게 구획하는 것은 바람직한 양형기준이라고 수긍하기 어려움

○ 기타 의견

- 단기간 내의 개정은 적절하지 않음
 - ▶ 양형기준의 수립이 실질적인 입법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2009. 7. 1. 양형기준을 세워 시행한 이래 3년 6개월만의 개정은 지나친 단기간 내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적어도 5년 정도는 시행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 양형기준의 수정을 통해서 살인범죄에 대해 형량범위를 상향한다고 해서 과연 살인범죄의 내용이 개선될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일반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형사재판의 양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인식개선,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사형제도폐지 등 정책적인 문제점과 함께 시행 후에 야기될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함. 지나치게 국민의 비판여론이나 실적 위주에 편승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함
- 중대범죄 결합살인 유형(제4유형)에 현주건조물방화살인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 현주건조물방화살인은 명백히 살인죄의 양형체계에 포섭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적용한 판례를 이유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양형기준에 포섭하는 것은 부당함.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지 않은 우리 대법원 판례는 상상적 경합과 관련하여 전체적 대조주의를 몰각한 것이며, 중한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는 형법 제40조의 문언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양형기준에서 이 판례를 답습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 현재의 양형기준체계는 현주건조물방화살인의 경우 중대범죄결합살인 유형에 포섭하지 않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유형에 포섭하고 있으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에 해당하므로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이렇게 하는 것이 살인죄의 양형기준에서 결합범 형태의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인죄의 양형기준에 관한 부분에 포함시키고 있는 우리 양형기준체계에 부합하기 때문임
- ▶ 현행 형법상 동일한 행위유형이라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 유무에 따라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치사죄”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살인”죄로 구별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경우에는 치사죄와 살인죄를 동일한 법정형인 7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데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이 5년이므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적용하는 경우(7년)에 비

하여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우려가 있음

- ▶ 이런 이유에서 우리 대법원은 이 경우에 상상적 경합이 아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³⁾ 이러한 판단은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처단형을 정할 때 전체적 대조주의를 취하고 있는 일반적 학설 및 대법원판례⁴⁾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중한 죄인 살인죄의 법정형으로 처단하되, 그 하한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하한인 7년보다 하회하지 않도록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적용임
- ▶ 이에 따라 양형기준 역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살인죄의 양형기준에, 살인의 고의가 없이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방화죄의 양형기준에 규정하는 것이 상당함

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내용에 모두 찬성함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수정안은 ‘참작 동기 살인’ 유형과 ‘보통 동기 살인’ 유형이 성범죄,

3)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4)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함은 그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뇌물, 사기 등 다른 양형기준의 일부 유형과 비교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가 낮다는 법원 안팎의 지적과 강력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여 규범적 조정을 통해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였는바, 이에 찬성함

- ▶ 권고형량의 범위를 조정하는 경우 합리적 근거와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 묻지마 살인, 보복 살인 등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등 인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는 현실 속에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는 물론 범죄예방을 위한 수단으로서 형벌이 기능할 수 있도록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임

○ 기타 의견

- 그 밖에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일부 수정, 참작동기 살인 유형의 정의 부분 추가, 신설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죄’를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포섭한 것 등에 대해서도 찬성함

바. 참여연대

○ 유형분류 및 유형의 정의에 대한 의견

- 참작동기 살인 유형의 정의부분에 ‘비관 등에 의한 친족 살인’을 추가하여 그 예시로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거나 치료의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열거하였는바, 국가가 생명경시의 풍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이러한 양형인자가 실제 재판에서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에 명시적으로 열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 참작 동기는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극심한 정신적 혼란과

같은 책임능력상의 고려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하며, 소위 ‘치료 중단 안락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을 제외한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가 급격하게 상향조정되었는바, 그 상향조정의 합리적 이유와 적절성 및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짐

○ 기타 의견-양형기준 설정 원칙과 방법에 관한 의견

- 살인범죄 자체의 양형기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분석·검토보다는 성범죄와 뇌물범죄 같은 특별법상의 범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살인죄의 권고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방법론상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 들고, 객관적으로 그 실체를 검증할 수 없는 국민여론에 기대어 양형기준을 수정하다 보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국민여론에 따라 양형기준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최고의 가치인 인간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살인범죄가 모든 범죄의 법정형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 권고형량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다른 범죄의 법정형과 그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에 비추어 살인범죄의 권고형량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 물론 입법부가 국민여론에 부응한다는 명목으로 성폭법, 아동법 등 성범죄의 법정형을 살인죄의 법정형보다 높게(아동성범죄의 법정형은 사형을 제외한다면 살인죄보다 중함)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균형이 최소화되

도록 조정하여야 함

- ▶ 권고 형량의 범위구간이 넓어지면 양형편차를 줄이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짐. 이번 수정안은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하면서 구간이 종전 3년 내지 4년이었던 것이 예컨대 살인범죄의 경우 5년(3유형 기본), 7년(5유형 기본), 10년(4유형 기본) 등으로 넓어졌음.
- ▶ 양형기준의 급격한 수정은 피고인에 대해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살인범죄의 행위시점은 동일하더라도 양형기준이 수정되기 전과 후에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처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민여론의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단순히 언론보도를 국민여론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살인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함에 있어 참작 동기 살인 유형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제외하였으나, 이 유형만 제외하고 다른 유형만 상향을 하게 되면 유형 간의 불균형이 생기고, 기준을 상향시키되 그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을 선택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도 기할 수 있으므로 참작 동기 살인 유형의 양형기준 역시 함께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함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중한 상해에서 일응의 객관적 기준 삭제 문제)

- 상해의 주수를 정해 놓은 것은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적보다 상해와 중한 상해를 구분하는 일응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

으로 봐야하므로, 4주, 5주 또는 6주로 기준을 정해 그 이상이면 중한 상해로 보는 것이 타당함. 중한 상해의 예를 봤을 때 4주 이하인 경우는 거의 없고 또한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의 문언이 있으므로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임

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유형분류 및 유형의 정의에 대한 의견

- 참작 동기에 의한 살인에 대한 평가

- ▶ 살인범죄는 매우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순간적인 격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stalking)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혹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 -에 대하여 형량을 상향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 ▶ 참작 동기에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거나 치료의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와 삶을 비관하거나 우울증 등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 속에서 자녀 등 친족을 살해한 경우를 추가 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책임조각사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사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으로 평가됨. 양자모두 규범적 관점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함
- ▶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오로지 주관적 사유에 의하여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 행위를 참작 동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오히려 참작 동기로 설정하여 양형을 낮게 가는 것으로 형사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 보다 양형은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행형의 단계에서 재사회화를 위한 치료 및 적극적인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권고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살인죄의 양형기준 상향에 대한 의견

- ▶ 살인죄의 양형 중 보통동기에 의한 살인죄의 형량이 성범죄 특히 아동 또는 청소년 성폭력 범죄와 형량이 동일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가 낮다는 법원 안팎의 지적 및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여 살인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상향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 이러한 문제는 현 양형기준에 의하면 상존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 개별 범죄별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양형실무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 의하면 개별 범죄별로 양형의 또 다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 따라서 앞으로 양형기준을 수정 개선함에 있어서는 전체 범죄별로 그 가중치를 두어 범죄 등급을 정하여 놓고 이에 대한 처단형의 기본적인 범주를 정하여 놓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살인범죄와 성범죄의 보호법익을 비교하면 ‘생명권’ 보호가 ‘성적자기결정자유’ 보호 보다는 우선될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관점에서 양형위원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별 경중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도 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현 살인죄의 양형인자 중 특별 행위 감경인자에 ‘피해자의 유발(강함)’, 일반 행위 감경인자에 ‘피해자 유발(보통)’ 이 규정되어 있는

데 이러한 피해자의 유책성에 의한 살인은 대부분 제1유형 참작 동기에 의한 살인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 살인범죄가 대부분 격정적 우발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유발은 살인죄에 개념 내재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더욱이 살인범죄에서는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을 항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살인범죄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피해자의 유발을 감경인자로 평가는 문제가 있음
 - ▶ 피해자의 유발이 반드시 감경인자로 필요한 것이라면 국민의 양형판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양형인자에 대한 정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유발이 강함 혹은 보통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현 양형기준은 모든 양형인자를 질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여 가중 양형인자와 감경양형인자 사이의 우열을 인정하지 않고 1:1의 상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에 의하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유발이 강함(특별감경행위양형인자)과 잔혹한 범행수법(특별가중행위양형인자)이 1:1의 상쇄관계가 있어 양형기준에서 기본으로 수렴하게 됨. 따라서 양형인자 간에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집행유예 기준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에 대한 의견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과 관련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지 명확하지 않음. 특히 지능범에 해당하는 증권금융범죄, 지식재산권 범죄와 같은 경우 범죄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일

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음

- ▶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와 더불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는 이러한 기준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이라는 참작사유도 지나치게 추상적인 것으로 보임
 - ▶ 우리나라 범죄에 있어서 볼 수 있듯이 화이트칼라 범죄인 경우 구속 수감되면 평소 건강하던 피고인도 지병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법원의 온정적인 판단을 갈구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점에서 당해 참작사유는 형의 집행단계에서 형의 집행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별개의 참작사유로 평가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과 관련하여 범죄에 수반하여 당해 가족이 일정 부분 금전적 고통을 수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 집행유예의 선고는 광의의 양형판단으로 사회적 위험성을 판단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참작사유는 재범의 위험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다시 평가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의 고령’과 관련하여 현대 과학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평균기대수명이 확대되는 작금에 있어서 ‘고령’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고령’이 수형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나이를 특정하거나 ‘고령’과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음’을 하나의 참작사유로 결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자. 한국여성의전화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양형인자 ‘피해자 유발’의 정의에서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가정폭력 등과 같이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존재한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간에 걸친 가정폭력은 유형을 분류할 때 고려되, 사건이 벌어진 직전의 가정폭력 실태는 양형인자의 정의에서 별도로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 즉 장기간에 걸친 가정폭력은 있었으나 사건 당일에는 가정폭력이 없었던 경우는 유형 분류단계에서만 고려하고 양형인자 부분에서는 피해자 유발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가정폭력도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는 유형 분류단계에서도 고려를 하고 양형인자 부분에서도 피해자 유발로 한 번 더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 ▶ 현재 규정만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 사건 당일에 구체적, 물리적 폭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유형 분류단계에서만 고려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 당일에 있었던 구체적 폭력은 양형인자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려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중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의 불명확성
 - ▶ 살인 범행의 경우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이러한 도구의 소지나 준비는 시간적으로 살인 범행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임. 그런데 양형기준의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항목의 경우 그러한 도구의 소지가 우연한 기회에 의한 것인지, 살인의 목적으로 준비한 것인지에 대한 구

분이 없고, 나아가 단순히 범행에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사전 준비 및 소지’로 기술되어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함

- ▶ 살인에 있어 범행을 ‘준비’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은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양형인자 설명만으로는 계획적 범행이라는 인자가 정확히 어떠한 맥락에서 가중적 요소에 포함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움. 범행 직전이라도 범행에 대한 준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계획적 범행은 범행의 준비와는 분명 다르게 이해되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양형기준상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임. 그렇기에 양형기준이 제시되었어도 양형기준을 놓고 또 각각의 해석이 달라질 것이고, 특히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사망사건을 다루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극대화될 것임
- ▶ 지금과 같은 규정만으로는 살인죄 피고인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도구를 집어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계획이 있다고 평가될 위험이 있는데 이는 나열된 여타 요소인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등과 비교해보았을 때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여짐. 따라서 지금의 규정을 "범행도구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입 내지 취득" 등으로 한정한다거나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만으로는 계획적 살인 범행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이외에 사전 공모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준비가 있는 등 추가적으로 해당 살인이 계획적 살인 범행임을 알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계획적 살인 범행"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 중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해석의 불명확성
 - ▶ 살해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자인 경우 사회적으로

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 약자에 대한 살해 행위라는 점에서 그
가중처벌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음. 양형기준은 이러한 피해자의
범위로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
한 자들을 포함시키고 있는바, 문언 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는 어려우나, 해석을 함에 있어 주취자 등을 범행에 취약한 피해
자로 포섭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됨

- ▶ 주취에 의하여 오히려 공격성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의
경우 사회적으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
히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에 대한
살인의 경우에도 주취하지 않은 상태에 비하여 운동 능력과 판
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살
인 범행으로 포섭한 판례들이 있어 문제가 있음⁵⁾
- 양형인자 중 ‘잔혹한 범행수법’ 적용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잔혹성을 보이거나 피해자에 중대
한 고통을 가하는 등의 경우 가중 처벌이 요구되고, ‘잔혹한 범
행 수법’의 경우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항목으로 보임. 그러나
‘잔혹성’의 경우 상대적인 평가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인 바, 그
항목 설정과 표현에 보다 신중하여야 함.
 - ▶ 살인범죄의 경우 판례에서 '잔혹한 범행수법'이 쉽게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참여재판 등의 재판실무 상에서 흉기를 이용
한 살인범죄가 다루어질 때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에 미치지
않은 경우더라도 '잔혹한 범행수법'이라는 요소의 명칭 때문에

5) 2012고합311 판결의 경우 상습적으로 주취하여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자를 살해한 사례인데, 이 경우
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음. 이는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들에 대
한 살해 행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양형 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배심원에 의하여 쉽게 양형요소로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함. 특히 살인이라는 결과의 발생의 전제로서 가해자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이 잔혹한 범행수법이 쉽게 인정되는 상황에서 수십 년간의 장기간에 걸친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발적 살해 사건과 같이 참작할 여지가 많은 살인범죄에서 집행유예의 선고 빈도가 극히 축소될 우려가 있음

- ▶ 그 외에도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살해의 경우에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가격빈도가 높아지기 쉽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음. 또한 '잔혹한 범행수법'이라는 양형인자는 가해행위의 양태 자체보다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극심한 고통을 느끼도록 한 가해자의 잔인한 '의도'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 것임을 생각할 때, '잔혹한 범행수법' 인자는 계획적 살인 범행의 요소들인 공모성이나 계획성, 준비성과 결부되어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 양형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때, 결국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심리 상태가 특별히 비난받을 정도여야 가중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인데,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에 무조건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정의내리는 것은 피고인의 심리 상태에 대한 고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임. 예컨대 피고인이 당황하거나 경황이 없거나 공황 상태에서 필요 이상으로 가격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현재 규정으로는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잔혹한 범행수법에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 따라서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

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부분을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특별히 피해자에게 고통을 더 가하겠다는 목적으로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로 수정해야 함.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의 경우 여러차례의 가해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계획적 범행에서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의견

- 현재 양형기준 상으로는 참작동기 살인의 경우 감경 영역에 포함된다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데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기준이 제시되어 기수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문제가 있음
 - ▶ 구체적으로 사건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살인범죄라 해도 참작동기 살인-감경 영역에 있으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살인미수에만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은 양형기준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요소만을 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살인의 기수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을 망설이게 될 것임. 따라서 살인범죄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집행유예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타 의견

- 현재의 양형기준은 양형인자가 어떠한 것이 있다고 나열하고 있을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에서 가중적 요소인지, 감경적

요소인지 설명이 부족함

- 또한 양형기준에서 서술되고 있는 단어나 개념이 전반적으로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모색이 필요함
 - ▶ 양형인자 각각이 왜 가중적 요소와 감경적 요소에 포함되는지,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자세하게 서술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어렵다면 어렵다면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의 의사록 같은 것을 따로 제시하여, 양형기준의 해석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함

차. 대한법무사협회

- 의견 없음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회신 의견

가. 대법원

○ 유형분류 및 유형의 정의에 대한 의견

- ‘유사강간’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재검토 필요
 - ▶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행위태양이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 등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로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실제 사안에서는 유사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의 구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님
 - ▶ 과거 선고 사례를 보면 공소장의 기재 내용 자체만으로 보아도 성폭법이나 아청법상 강제유사성교죄로 기소해야 할 사안을 검사가 단순 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
 - ▶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아청법상 청소년 대상 강제유사성

교는 물론 형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성인 대상 강제유사성교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로 분류하여 권고 형량범위나 양형인자표를 적용하고 있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는 특별감경인자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하지만, 수정안과 같이 유사강간을 강간죄로 분류할 경우에는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는 양형인자의 적용이 불가능한데, 실제 사안에 따라서는 위 인자가 적용되어야 할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예컨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사례와 성기에 손가락을 단 1회 삽입한 사안을 비교할 때 양자 사이에 권고 형량범위상 큰 차이를 두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있음

- 형법상 준강간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 죄(의제강간)에 있어서는 법문상 여전히 종전과 같이 처벌대상을 ‘간음’행위(성기삽입)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형법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한 준유사강간죄, 의제유사강간죄를 상정할 수 없음
- 신설된 범죄 또는 유형을 기존 유형에 포섭하는 것보다는 새로 항목을 만들어 별도로 형량범위를 권고함이 적절함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관련하여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을 2유형(일반강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함
 - ▶ 강제추행과 강간은 엄연히 죄의 성격이 다르고,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과 동시에 일어나는 추행도 인정하는 등 판례상 그 인정 범위가 넓고 유형이 지극히 다양하여, 상대적으로 성립 자체가 엄격한 강간(폭행·협박의 의미나 간음의 의미 해석이 엄격한 편)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음
 - ▶ 강제추행은 유형이 다양한 만큼 양형의 폭을 넓히고 법관이 사

안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거나 또는 제2유
형에 포함시킬 경우 상한과 하한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관련

▶ 아래의 서술식 양형기준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임

【수정안】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강제유사성교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특수강도유사강간’은 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이 아닌 강도강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서술식 기준의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이라는 부분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임

▶ 이러한 문제점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유형에 ‘유사강간치사’를 추가

▶ 개정 형법은 유사강간죄(제297조의2)를 독립된 성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신설하였으므로, 위 유형의 구분명에도 이를 명시하여 ‘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를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강도강간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 상향조정에 원칙적으로 수긍하나, 다만, 감경영역 하한을 5년에서 6년으로 수정한 것은 작량감경 시 선고형이 5년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에 의하여 선고 가능한 범위를 6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이 되어 부적절하므로, 법정형

이 같은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경우와 같이 5년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강도강간 및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각 가중영역이 종전보다 많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다소 하향할 필요가 있음
- 성년 유사강간/준유사강간, 13세 미만 의제유사강간은 행위태양의 측면에서는 강간보다 경한 면이 없지 않으나,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는 일반적인 강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형법 개정 내용과 같이 하한만 2/3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함
- 성년유사강간은 성년강간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에 반하여 청소년유사강간은 청소년강간과 동일한 형량범위를 권고하고 있어 문제임
 - ▶ 청소년유사강간과 청소년강간의 유기징역형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성년, 장애인, 13세 미만의 경우 모두 강간과 유사강간의 권고 형량범위가 다르므로, 청소년의 경우에만 강간과 유사강간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의문이 있음
 - ▶ 특히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행위태양이 강간에 비하여 광범위함에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권고 형량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 청소년 강제추행·강간상해의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청소년 강간의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높음에도, 양형기준 수정안에 의할 때 청소년 강제추행상해의 권고 형량범위(감경: 2년6월~5년, 기본: 4년~7년, 가중: 6년~9년)가 청소년 강간의 권고 형량범위(감경: 3년~5년6월, 기본: 5년~8년, 가중: 6년~9년)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문제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가중영역을 상향조정한 것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와 비교하여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보통

동기 살인의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15년 이상, 무기”로 상향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삭제하거나 일반양형인자로 변경함이 타당
- 특별양형인자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와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가 따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기습 추행’ 등과 같이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에는 추행의 정도도 약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 중복 평가의 문제가 있음
- 현재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감경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도 공탁이나 검찰을 통하여 합의의사가 피해자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 있음
- 가중요소 중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는 신체 또는 정신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의미하는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이미 유형을 달리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재차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하여 중복하여 형을 가중하는 것은 의문이 있음
- 성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낙태한 경우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함이 마땅하겠으나, 특별가중인자인 ‘중한 상해’의 예시인 ‘후유장애, 심한 추상장애 또는 위험한 부위 상해’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낙태한 경우”를 ‘중한 상해’의 예시로 추가하거나 이를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할 필요 있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한 것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타당함
 - ▶ 다만, ①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는 폭행·협박을 사용한 경우와 행위태양이 다르므로 적어도 일반감경인자로는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② 미성년자 등에 대한 범죄에서는 위 인자를 존치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기본으로 하고 폭행·협박을 사용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취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유형분류에 대한 의견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시의 양형기준에 있어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청소년 유사강간’이 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청소년강간 등이 피해자에게 주는 큰 충격과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을 감안했을 때 (비록 친족관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과 같이 보는 것은 형벌의 균형에 맞지 않으며 적어도 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같이 분류하는 등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또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기 보다는 청소년인 경우가 많으므로 원칙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강간으로 포섭하되 친족관계/청소년이 중복될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강간·강제추행 등의 일반적 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감경요소로 고려되던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가 삭제되

었으나,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인바 위계·위력을 위 폭행·협박과 대등하게 평가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여야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따라서 의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위계·위력도 폭행·협박에 준하여 처벌(감경요소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겠으나, 그 이상의 성인인 경우 폭행·협박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위계·위력이 아닌 이상 감경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 법무부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와 관련하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형량 범위 수정 필요

o 현재 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6년 - 10년	9년 - 13년	12년 - 17년

- ▶ 현재 제2유형에 속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주거침입 등 강간 및 특수강간과의 법정형을 비교하면, 유기 징역형이 2년 이상 더 높아 법정형이 서로 다름에도 같은 제2유형으로 포섭되어 있어, ‘동일 유형, 같은 법정형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 법정형 비교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법 제5조①항 : 징역 7년 이상)
- 주거침입등 강간(성폭법 제3조①항 : 무기, 징역 5년 이상)
- 특수강간 (성폭법 제4조①항 : 무기, 징역 5년 이상)
- 청소년 강간 (아청법 제7조①항 : 무기, 징역 5년 이상)

- ▶ 현 기준안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의 하한은 5년으로 이는 법정형(징역 7년 이상) 이하로 하향 설정되어 있어 아무런 가중 또는 감경적 양형 요소가 없는 기본적인 사안에서 처음부터 법정형 이하 선고를 예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 따라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정형 하한을 기본 영역의 하한으로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형량범위를 제시함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법정형이 유사한 ‘13세 미만 유사강간’⁶⁾의 형량범위를 참고함)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3년 - 5년6월 4년 - 7년	5년 - 8년 6년 - 9년	6년 - 9년 8년 - 12년

-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형량 범위 조정 필요

6) 성폭법 제7조② : 13세 미만 사람을 유사강간 ➡ 법정형 징역 7년 이상

o 현재 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①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 형법상 일반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임에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를 살펴보면, 가중영역의 상한이 ‘법정형을 작량 감경한 하한’ 5년에도 미치지 못함. 따라서 법정형에 상응하게 형량 범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② 제2유형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인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법 제5조 제2항 참조)의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그 보다 낮은 법정형을 가진 장애인 강제추행(성폭법 제6조 제5항, 법정형 징역 3년 이상)과 같은 형량범위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임
- ▶ 아울러, 가중영역(징역 4년-7년)의 하한이 징역 4년으로 법정형의 하한(징역 5년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즉 가중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정형 하한보다 낮게 선고될 수 밖에 없도록 양형기준테이블을 설계하는 것은 문제임. 따라서 같은 법정형을 사용하고 있는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형량범위를 참고하되,

감경영역의 하한, 기본영역의 상한, 가중영역의 하한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년6월 - 3년 3년 - 5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4년 - 7년 5년 - 8년

③ 제2유형 중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유기징역형만 비교하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동일하므로, 위에서 제시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 범위를 제시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주거침입 등에 의한 강제추행	1년6월 - 3년 3년 - 5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4년 - 7년 5년 - 8년

④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 추행 포함)

- ▶ 현재 수정안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의 상한과 하한의 각 2/3로 감경한다는 취지로 무기함으로써, 이를 산술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셈임

	청소년 강제추행	1년 - 2년	1년 8월 - 3년 4월	2년8월 - 4년8월
--	----------	---------	---------------	-------------

- ▶ 그러나 실무상 ‘1년 8월’, ‘3년 4월’, ‘2년 8월’, ‘4년 8월’ 등 월 단위로 선고하는 예가 드물기 때문에, 결국 법정형을 대비하여 유사한 법정형을 가진 형량 범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렇다면, ‘징역 3년 이상’이라는 법정형을 가진 ‘특수강제추행’의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아래의 형량범위를 제시함

	청소년 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 6월 - 5년	4년 - 7년
--	----------	-----------	------------	---------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형량 범위 조정 필요

o 현재 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6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 유사성교는 3유형에 포섭

①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포함) 상해/치상과 관련하여 제3유형에 포섭하는 것이 타당함

- ▶ 아청법상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신설되었음. 현재수정안은 청소년 강제추행 상해/치상을 제2유형에 포섭하는 것으로 제시, 즉 이는 기본범죄인 ‘청소년 강제추행’의 법정형(징역 2년 이상)이 강간죄의 법정형(징역 3년 이상)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됨
- ▶ 그러나 청소년 강제추행 상해/치상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이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치상(성폭법 제8조 제2항)과 법정형이 같음

- ▶ 또한, 기본범죄인 ‘청소년 강제추행’은 ‘강간’과 행위 방식이 전혀 상이함에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리임. 오히려 기본범죄 성격이 유사한 ‘친족관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므로 ‘법정형, 기본범죄의 성격’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제3유형으로 포섭되어야 함

② 청소년 강간(또는 유사강간) 상해/치상 관련하여 제4유형에 포섭하는 것이 타당함

- ▶ 아청법상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신설되었음. 현재 양형기준 수정안은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상해/치상을 제3유형에 포섭하는 것으로 제시, 즉 이는 기본범죄인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의 법정형(징역 5년 이상)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법정형(징역 5년 이상)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됨
- ▶ 그러나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상해/치상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이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상해/치상(성폭법 제8조 제2항)과 법정형이 같음. 또한, 기본범죄인 ‘청소년 강간’을 ‘친족관계 강제추행’과 행위방식이 전혀 상이함에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리임. 오히려 기본범죄 성격이 유사한 ‘친족관계 강간’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 따라서 ‘법정형, 기본범죄의 성격’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제4유형으로 포섭되어야 함.

※ 13세 이상 대상 치상/상해죄의 법정형과 기본범죄 법정형

유형	구분	상해/치상 법정형	기본범죄 법정형
1	일반강제추행	무기, 5년 ↑	10년 ↓
2	일반강간	무기, 5년 ↑	3년 ↑
3	친족관계에 의한	무기, 7년 ↑	5년 ↑

유형	구분	상해/치상 법정형	기본범죄 법정형
	강제추행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무기, 7년 ↑	7년 ↑
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무기, 10년 ↑	무기, 5년 ↑ 또는 3년 ↑
6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무기, 10년 ↑	무기, 5년 ↑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특별가중인자로 상향
 - ▶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의 경우에는 합의 시도 중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개정법에서 ‘친고죄’를 폐지한 이유 중 하나로 가해자의 무리한 합의시도, 합의 중용, 합의 강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도 있음. 따라서 특별가중인자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함
-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특별가중인자로 상향
 - ▶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부부관계, 생활을 같이 하는 친족관계)를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신뢰에 기반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범죄로 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후유증을 남김. 영국에서는 성폭력 범죄에서 권력의 남용과 신뢰관계의 남용을 가중요소로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성폭력이 일반적으로 아는 관계에서의 권위와 권력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영향력이 없는 일반가중이 아닌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의견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은 삭제하는 것이 타

당함

- ▶ 개념이 불명확하여 실무상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충분한 예시를 통하여 구체화하거나, 범죄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전제되거나 오히려 가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살인범죄 또는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해당 참작사유가 긍정적 고려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임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 구속이나 형의 집행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유일 뿐 집행유예의 선고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아야 하며, 이는 국민들로부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지탄을 받는 대표적 참작사유 중 하나이므로 참작사유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인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은 삭제하거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야 함
 - ▶ 범죄자의 처벌에 있어서 이 요소를 고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범죄의 심각성·중대성이나 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 판단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작사유에서 삭제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인 ‘피고인의 고령’은 적용 범위를 한정함이 타당
 - ▶ 고령 여부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실무상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고령’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시하여 그 적용범위를 한정함이 타당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삭제함이

타당함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인 ‘진지한 반성’의 경우 ‘진지한 반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들을 정하여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거짓 태도 등으로 오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

○ 기타 의견

- 각 양형인자의 중요도에 따라 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인자별로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으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 ▶ 현행 양형기준은 양형인자를 단순히 나열하고 각 특별양형인자 또는 일반양형인자의 평가에 있어 이를 1:1로 동등한 가치를 두고 그 인자 수에 따라 형량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량범위 결정에 있어 단순한 양형인자의 개수로 판단하는 것은 양형인자에 따라 그 중요도가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일반 양형인자에 어떠한 규범력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같은 형량범위에 내에서도 양형 편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음
 - ▶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법조문 규정형식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특정범죄유형의 법정형과 이에 상응하는 형량테이블 유형간의 형량 차이의 모순점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양형기준 설정시 기준으로서의 역할이 반감되는 측면도 있음

라. 대한변호사협회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감경요소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부당함
 - ▶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자를 모두 포함함. 대상자의

연령이나 의사능력의 수준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들에 대한 성범죄에서 일률적으로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를 모든 양형요소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폭행·협박에 의한 경우와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 ▶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와 비교하여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계나 위력에 의하여 간음한 경우는 적어도 일반감정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이 타당함
- ▶ 물론 13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나 장애 등을 이유로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를 폭행·협박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예외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양형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설시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함
- ▶ 즉,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를 폭행·협박에 의한 경우보다 가볍게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양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삼는 것이 적절하고, 그 반대의 경우, 즉,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와 폭행·협박에 의한 경우를 동등한 것으로 취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달리 평가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사기와 공갈 등)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에서는 다른 형량을 적용한 사례가 있음
- 양형인자 중 “중한 상해”부분은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 살인죄의 양형인자 중 “중한 상해” 부분에서 종래 “치료기간이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가 수정안에서 삭제되었는바, 기본적으로 범죄의 유형 여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표현의 양형인자는 동일한 내용을 담도록 하는 것이 양형기준의 통일적 체계를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살인죄와 성범죄의 경우에 “중한 상해”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양형기준의 통일적 체계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 ▶ 살인죄에서 “치료기간이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가 삭제된 배경에는 양형기준 시행 이후 벌어진 살인미수범죄의 거의 절반 가량이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사실상 살인미수범죄의 양형기준은 가중영역만이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바, 그렇다면 통상 폭행을 수단으로 저질러지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 그 치료기간이 대부분 4-5주 이상인지 아니면 그 이하의 경우가 대부분인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음. 만일 성범죄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부분 상해의 결과가 치료기간이 4-5주 이상인 범죄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면, 중한 상해에서 치료기간 4-5주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기타 의견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 현재의 양형기준대로라면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수립되는 셈인데, 유독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 형법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포함하여 이 죄에 대한 양

형자료가 지나치게 부족하여 양형기준을 수립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특별히 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누락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됨. 만일 양형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규범적인 관점에서 양형기준을 수립할 수도 있으므로, 위 범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의 수립을 주저할 이유가 없음. 또한 양형기준 적용범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생략된 채 해당 구성요건과 유사한 구성요건에 대한 양형기준을 시행함으로써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에게는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조회는 충분한 검토시간을 두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양형인자 삭제에 동의함
 - ▶ 이번 양형기준 수정안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가 특별감경인자로 규정되어 있던 것과 관련하여,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위 내용을 양형인자에서 모두 삭제하였는바,
 - ▶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과 같이 방어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들의 경우 가해자가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만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정인자로 규정한 기존의 양형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았음.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의 경우에도 강간, 강제추행의 예와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번 수정안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 기타 의견

- 실제 선고형과 양형기준의 간극이 커지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 ▶ 최근 성폭력 관련 법률에서의 법정형의 조정 및 새로운 구성요건의 신설 등에 따라 양형기준을 조정한 부분은 대체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 다만,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별다른 합리적 검토도 없이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향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자칫 양형기준조차도 재판실무와 동떨어져서 허울뿐인 기준이 되지 않도록 실제 선고형이 양형기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내용에 모두 찬성함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강도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임에도 그에 대한 권고 형량 기본영역이 법정형 하한의 경계에 있거나 그에

못 미치는 등 법정형에 비해 양형기준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 ▶ 수정안은 범행의 흉포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 범죄들에 대하여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 형량범위를 규범적으로 상향조정하였는데,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향조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범죄들에 대하여도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할 합리적 근거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찬성함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영역 상향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고, 이에 찬성함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모두 삭제하였는데, 이에 전적으로 찬성함

- ▶ 수정안은 외부의 압력에 쉽게 겁을 먹거나 성범죄에 대하여 무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라 해서 그 행위불법을 낮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모두 삭제하였는바, 전적으로 찬성함

- ▶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있어서는 이들 피해자의 특성상 외부의 압력에 쉽게 겁을 먹거나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종종 문제가 되고 있음. 피해자의 이와 같은 특성과 이를 악용하는 범죄

현실을 고려한다면, 결코 행위불법이 낫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는 물론 범죄예방을 위한 수단으로서 형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고 생각함

사. 참여연대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영역 상향과 관련하여 강간치사와 강제추행치사가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기본범죄의 불법에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양형기준이 동일한 권고형량을 제시하여 형법 이론적으로 문제(결과책임사상)가 있었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가중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를 높임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보임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폭행·협박과 위계·위력은 행위불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객체가 아무리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위계·위력을 특별감경인자에서 일반감경인자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기타 의견

- 성범죄 법정형의 거듭된 개정이 그 적절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양형기준 수정안은 관련 법령에서 처벌 강화를 위해 범죄유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개정함에 따라 그 권고 형량범위를 수정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유사강간/준유사강간의 형량범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 수정안은 성년 유사강간/준유사강간에 대하여 일반강간의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하고 있는바, 유사강간/준유사강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측면에서 본다면 행위불법이 강간죄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나 모멸감 등을 고려해본다면 강간죄에 비해 오히려 죄질이 더 좋지 않다할 것임
 - ▶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강간/주거침입등유사강간/특수유사강간 및 강도유사강간 등에서는 강간죄와 유사강간죄가 동일하게 양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년 유사강간/준유사강간을 일반강간보다 형을 감경하는 것은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해보더라도 타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사강간/준유사강간의 형량범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기타 의견

- 근본적으로는 살인죄 및 성범죄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게 규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삭제한 것은 타당함
 - ▶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의 경우 외부의 압력에 쉽게 겁을 먹거나, 성범죄에 대하여 무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

할 수 있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위계·위력의 행위불법이 낮다고 평가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함

- 유사강간행위에 대한 감경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 ▶ 현 수정안에 의하면 성년 유사강간/준유사강간 및 의제유사강간 일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라고 본다면 결코 자신의 음부에 대한 간음 행위와 비교하여 구강 혹은 항문에 대한 유사 간음행위로 인한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 침해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함. 또한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라도 이러한 유사강간행위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더욱더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사강간행위에 대한 감경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친족간 성범죄에서 특별감경요소인 ‘처벌 불원’은 삭제하는것이 타당
 -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친족간 성범죄가 2008년 293건에서 2010년에는 369건 2011년에는 469건으로 4년 동안 60% 늘어났는데, 친족간 성범죄의 특징 중 하나가 가족 구성원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임. 친족간 성폭력이 발생하여 피해자인 아동이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 바로 이를 수사기관에 알려 처벌을 하고자 한 경우에 비해 이를 숨기거나, 아버지 혹은 특히 자신의 남동생(외삼촌)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발견하게 됨. 법원에서도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 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방관한 어머니를 방조로 처

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기는커녕 범죄를 숨기고, 조장하고, 도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 따라서 친족간의 성폭력 범죄의 특성(어머니 역할의 부재)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감경사유로 평가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함. 피해자가 가족의 해체 등을 우려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한 경우, 이를 감경인자로 판단하여 가해자를 가정으로 돌려보내 피해 아동과의 가족 구성원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피해 아동을 다시 2차 성폭력의 위험에 완벽하게 노출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임

- 가중·감경 양형인자 수의 불균형 문제

- ▶ 현 양형기준에 의하면 13세 이상 강간죄에서 특별 감경 행위 인자는 하나도 없는 반면 특별 가중 행위 인자는 9개나 됨. 13세 이상 강제추행죄의 경우도 특별 감경 행위인자는 2개인 반면 특별 가중 행위 인자는 5개이며, 13세 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도 특별 감경 행위인자는 1개이나 특별 가중 행위인자는 6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특별 감경 행위인자는 1개, 특별 가중 행위인자는 7개로 양형인자의 편차가 매우 심함
- ▶ 현 양형기준에서는 감경·기본·가중영역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중인자와 감경인자를 1:1의 단순 상관관계를 인정하여 상쇄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있어 감경인자와 가중인자의 개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사실상 가중영역으로만 양형이 판단될 수 있음. 이러한 우려는 13세 이상 강간죄의 경우 무조건 발생함. 왜냐하면 특별감경행위인자가 하나도 없어 무조건 가중영역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가중인자가 2개 이상 되는

경우에는 특별 가중이 되는 결과가 발생함.

- ▶ 그러므로 현재의 가중인자와 감경인자의 평가 방식으로 사용되는 단순 비교 1:1의 상쇄는 지양되어야 하며 개별 양형인자별로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차. 한국성폭력상담소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일반적 기준-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해야 함
 - ▶ 유사강간죄 형량 범위를 일반강간보다 2/3 수준으로 낮추면 강제추행에 준하는 수준이 되어 유사강간죄를 강간죄에 준하도록 도입한 의미가 없게 됨. 유사강간죄를 강간죄 보다 행위의 불법성을 낮게 평가할 이유가 없으므로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해야 함
- 일반적 기준-13세 미만 대상-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간죄는 동일한 형량을 적용해야 함
 - ▶ 의제유사강간죄가 의제강간죄 보다 형량을 감경 받아야 할 근거가 없음. 유사강간죄 도입 목적에는 강간죄 구성요건과 일치하지 않으나 강제추행과 차별화하여 처벌하는 것도 존재함. 따라서 동일한 형량을 적용해야 함

카. 한국YWCA연합회

○ 유형의 정의에 대한 의견

- 일반적 기준-13세 이상 대상-강간죄 제3유형(강도강간) 유형의 정

의와 관련하여 ‘특수강도(미수범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이상 부녀를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에서 ‘부녀’를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타. 여성가족부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양형기준의 기본영역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만일 양형기준의 기본영역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야 함

파. 대한법무사협회

- 의견 없음

IV.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게재 홈페이지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 양형기준 책자 발간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13. 4. 22. 양형위원회 제48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 : 2013. 5. 초순(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13. 5. 중순(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서면 질의 및 회신

○ 서면질의

순번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13. 4. 5.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동법 제333조, 동법 제297조에 대한 2003년과 현재의 양형기준 및 형법 제37조 후단, 동법 제39조 제1항에 대한 양형기준
2	2013. 4. 5.	○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검토 요청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성범죄 및 강도범죄의 양형기준은 2009. 7.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2003년 당시의 위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서 그와 관련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2013년 현재의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특수강도강간 등-2003년 당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음)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특수강도강간 등) 일반적 기준 - 감경: 5년-8년, 기본: 7년-10년, 가중: 9년-13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

과 하한을 1.5배 가중

- 형법 제334조 제2항(특수강도)

일반적 기준 - 감경: 2년6월-4년, 기본: 3년-6년, 가중: 5년-8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형법 제333조(강도)

일반적 기준 - 감경: 1년6월-3년, 기본: 2년-4년, 가중: 3년-6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형법 제297조(강간)

일반적 기준 - 감경: 1년6월-3년, 기본: 2년6월-5년, 가중: 4년-7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

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i)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ii)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iii)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 상호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사전에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양형위원회가 설정하는 양형기준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에 의해 권고적 효력이 있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또한 개별적·구체적인 형사재판의 결과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 외에 법률에 규정된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결정되므로 위와 같은 양형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형기준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부분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